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840호
- 나. 제안자 : 박상혁 의원 외 56명
- 다. 제안일 : 2023. 5. 30.
- 라. 회부일 : 2023. 6. 3.

## 2. 제안이유

-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3조 제7호)
- 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단서)
- 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3.6.8. ~ 6.12.) 결과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미래청년기획단) : 원안 가결

## 5. 검토 의견

###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 개정(2023.3.21.개정, 2023.9.22.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행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7호는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안 제 10조제3항은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상위법 규정에 맞춰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이 없을 경우의 청년위원 위촉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 ~ 6. (생략)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_____ _____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략) ③ _____ _____ _____ _____ 위촉하여야 하되, 청년정책을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④ ~ ⑤ (생략)</p>	<p>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p> <p>⑤ ~ ⑥ (현행 제4항~제5항과 같음)</p>

## 나.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조항은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이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기본법」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p>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u>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u>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b>10분의 3 이상</b>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t;개정&gt;</u></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u>&lt;신설&gt;</u></p> <p>④ ~ ⑥ (현행 ③ ~ ⑤와 같음)</p>

- 개정 전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위촉직 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sup>1)</sup>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최소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었음
- '23.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이해됨

#### 다. 조례안 검토 내용

##### (1) “청년친화위원회” 정의 (안 제3조 제7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7호는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위원회에 대해 위촉직 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 다만, 청년위원 위촉 의무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위원회 관련 조례 전반을 점검하여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위촉 비율 : 2분의 1 이상

(2)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최소비율 (안 제10조 제3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1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 다만, 「청년기본법」에서는 위촉직 위원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확인하고 위원회 구성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임

(3) 자격을 갖춘 청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안 제10조 제4항)

- 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령 및 특성상 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청년위원 위촉비율의 하한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 「청년기본법」에서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같은법 제15조의2<sup>2)</sup>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 다만,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청년인재 정보 수집·확보에 추가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 「청년기본법」제15조의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청년기본법」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시행령 개정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실질적인 청년참여의 확대를 위해 청년인재 정보 수집 노력과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임

### 1.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현황

- 지정현황 : 서울시 위원회 총 251개 중 158개 위원회 (63%)
- 청년친화위원회 목록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1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1인가구담당관
2	DMC기획위원회	미디어콘텐츠산업과
3	감사청구심의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5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일자리정책과
6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공간기획담당관
7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8	공공급식위원회	친환경급식과
9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디자인정책담당관
10	공공미술위원회	디자인정책담당관
11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12	공유촉진위원회	시민협력과
1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시민협력과
14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조사담당관
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영유아담당관
16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홍보담당관
17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
18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정책과
19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금융투자과
20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일자리정책과
2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협력과
22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23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24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	문화정책과
25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환경정책과
26	도서관위원회	서울도서관
27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건축기획과
28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과
29	도시농업위원회	농수산유통담당관
30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자연생태과
31	도시재생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균형발전정책과
32	도시재생위원회	균형발전정책과
33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과
34	먹거리시민위원회	식품정책과
35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정책과
36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문화정책과
37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문화예술과
38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정책과
39	물가대책위원회	공정경제담당관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40	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과
41	물순환시민위원회	수변감성도시과
42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치수안전과
43	미래유산보존위원회	문화정책과
44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디자인정책담당관
45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평생교육과
46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자치행정과
47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과
48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담당관
49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남북협력과
50	빅데이터심의위원회	빅데이터담당관
51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
5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과
5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거안심지원반
54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공정경제과
55	사회주택위원회	주택정책과
56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공정경제담당관
57	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경제정책과
58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59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생활환경과
60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61	서울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회	관광정책과
62	서울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교육정책과
63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운영위원회	건축기획과
64	서울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	관광정책과
65	서울브랜드위원회	서울브랜드담당관
66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소상공인담당관
67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자원순환과
68	서울시 의료관광활성화 추진협의회	관광산업과
6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시정연구담당관
70	서울시수소산업 육성위원회	친환경차량과
71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72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미디어콘텐츠산업과
73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
74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75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76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담당관
77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양성평등담당관
78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양성평등담당관
79	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담당관
80	세빛섬사업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81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경제담당관
82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83	스마트도시위원회	디지털정책담당관
84	시민건강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85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민협력과
86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담당관
87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홍보담당관
88	시민행복위원회	시민협력과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89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식품정책과
90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식품정책과
91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식품의약품부
9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지원과
93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총괄과
94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과
95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정책과
96	에너지정책위원회	기후환경정책과
97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98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문화재정책과
99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행정국 총무과
100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아이돌봄담당관
10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가족다문화담당관
102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감염병관리과
103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소상공인담당관
104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105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과
106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미래첨단교통과
107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과
108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과
109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택시정책과
110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안전총괄과
111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담당관
112	좋은빛위원회	도시경관담당관
113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행정국 자치행정과
114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	소상공인담당관
115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소상공인담당관
116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경제정책과
117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재정담당관
118	지방분권협의회	조직담당관
11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가담당관
120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대외협력과
121	지역서점위원회의	서울도서관
122	지역혁신협의회	균형발전정책과
123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건축기획과
124	창업정책위원회	창업정책과
125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	안심돌봄복지과
126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반
127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정책과
128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체육정책과
129	축제위원회	문화예술과
130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친환경급식과
131	택시정책위원회	택시정책과
132	투자심사위원회	재정담당관
133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134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교육지원정책과
135	학술용역심의회	시정연구담당관
136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청년사업반
137	한강시민위원회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138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홍보담당관
139	환경보건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140	4차산업혁명위원회	경제정책과
141	공정관광위원회	관광정책과
142	공정경제위원회	공정경제담당관
143	물산업진흥위원회	물재생시설과
144	뷰티산업육성위원회	뷰티패션산업과
145	서울공예박물관 운영위원회	서울공예박물관
146	승강기 안전관리 위원회	건축기획과
147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경제정책과
148	유망중소기업인증정책위원회	경제정책과
149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정책과
1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환경정책과
151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서울기록원
152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서울기록원
153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서울기록원
154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시민참여위원회	서북병원 원무과
155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회	예산담당관
156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공원여가정책과
157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물재생계획과
158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청소년정책과

## 2. 2022~2023년 청년위원 위촉계획

구 분	'22년까지 실적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위원위촉(10%) 달성 위원회 비율	36%(57개)	50%(79개)	65%(103개)	75%(119개)	85%(135개)